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(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11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05년 3월 18일)
 상정・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개발사업소장 권 병 준)

□ 제안사유

- 소사역세권에 위치한 이 지역은 저층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역세권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, 장래 소 사-원시가 복선전철 환승역의 역세권으로서 도심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 역으로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 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임.
- 본 지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합 리토지이용 및 기반시설확보, 주거환경개선,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.
-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[소사1구역] 15,724.4㎡(4,756평), 소사구 소사 본2동 66번지 일원[소사2구역] 7,203.3㎡(2,179평), 원미구 소사동 48-21 번지 및 심곡동 490-62번지 일원[소사3구역] 80,950㎡(24,487평)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임.

○ 주 용도는 도심기능 수행을 위한 상업, 업무, 문화 시설 및 주거시설의 복합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공원, 광장, 주차장, 도로 및 녹지, 공공공지 등의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.

▶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 분	정비사업의 구분	구역의명칭	위 치	면적(m²)	비고
	규 도시환경 정비사업	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		103,877.7	
7]77		-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	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대	15,724.4	
신규		- 소시·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	소사구 소사본2동 66번지 일대	7,203.3	
		- 소시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	원미구 소사동 48-21번지 일대 원미구 심곡동 490-62번지 일대	80,950.0	

▶ 토지이용계획(기반시설계획)

구	분	명 칭	면 적(m²)	비 율(%)	비고
		합 계	103,877.7	100.0	
드시킨	L리계획 -	일반상업지역	6,460.0	6.2	
	다기역 - 지역	준주거지역	34,677.7	33.4	제3종일반주거지역 →준주거지역
		제3종일반주거지역	62,740.0	60.4	
		합 계	103,877.7	100.0	
		소 계	77,540.0	74.6	
	획지	주상복합	23,073.0	22.2	
		공동주택	40,835.0	39.2	
사	계획	판매·업무·문화용지	9,832.0	9.5	
업		종교용지	3,800.0	3.7	
계		소 계	26,337.7	25.4	
획		도 로	18,371.7	17.7	
'	정비기반	광 장	1,000.0	1.0	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
	시설계획	주 차 장	1,120.0	1.1	고기계력시결
		광장 및 주차장	1,638.0	1.6	
		공원 및 주차장	4,208.0	4.0	

▶ 구역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

구 분	면 적(m²)	1구역	2구역	3구역	비고
구역 면적	103,877.7	15,724.4	7,203.3	80,950.0	
정비기반시설면적	26,337.7	4,474.4	2,380.3	19,483.0	
도 로	18,371.7	2,354.4	742.3	15,275.0	
광 장	1,000.0	1,000.0	_	_	
주 차 장	1,120.0	1,120.0	_	_	
광장 및 주차장	1,638.0	_	1,638.0	_	
공원 및 주차장	4,208.0	_	_	4,208.0	

►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대한 계획 【소사1구역】

획지및용도	위 치	구	분	계 획 내 용		
2.314			허용 용도	◦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	
· 소개 [주상	· 소사1 [주상 · 원미구 소사	용도	권장 용도	◦판매 및 영업시설, 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(아파트),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		
복합 용지]	원미구 소사동 42, 43번		불허 용도	· 준주거지역 불허용도		
용 시]	지 일원	지 일원	지 일원	건	폐 율	∘60%이하(고층부 탑상형 : 6층이상 건폐율 40%이하)
		용적률		· 용적률 : 500%이하		
		높	०]	_		

【소사2구역】

획지및용도	위	え	구	분	계 획 내 용
				허용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· 소사2		7	용도	권장 용도	o 판매 및 영업시설, 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(아파트)
[주상복합 용지]	소사구본동	² 소사 66번지		불허 용도	· 준주거지역 불허용도
	일원		건 :	폐 율	∘ 60%이하(고층부 탑상형 : 6층이상 건폐율 40%이하)
			용 적 률		· 용적률 : 500%이하
			높	৹	_

【소사3구역】

획지및용도	위 치	구	분	계 획 내 용
			허용 용도	◦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		용	 권장 용도	-
· 소사3 -1 [주상복	•원미구 심 곡동 489 번지 일원	· 냇	<u>불</u> 허 용도	。일반상업지역 불허용도。미관지구내 불허용도(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「민간부문 시행지침」제10조 및 제11조 참조)
합]	uleu	건	폐 율	◦ 70%이하(고층부 탑상형 : 6층이상 건폐율 40%이하)
		용	적 률	· 용적률:500%이하
		높	0]	◦20층 이하
			허용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·소사3 -2	·원미구 소 사동 46	용도	권장 용도	·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-z [공동	사동 46, 86번지 및 심 곡 동 490번지		불허 용도	· 일반주거지역 불허용도
주택]	490번지 일원	건	폐 율	· 50%이하(탑상형:40%이하)
	근건		적 률	기준용적률: 250%이하완화용적률: 295%이하
		높	이 청용	
· 소시3	·원미구 소 사동 49, 74번지 일		허용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-3		용도	권장 용도	·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[공동 주택]			불허 용도	· 일반주거지역 불허용도
, 13	원	건	폐 율	· 50%이하(탑상형:40%이하)
		용 적 률		기준용적률: 250%이하완화용적률: 390%이하
		높 이		-
2 130			허용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·소시3 -4		용도	권장 용도	◦판매 및 영업시설, 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(아파트),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
[판매. 문화	・원미구 소 사동 44번 지 일원		불허 용도	· 준주거지역 불허용도
.업무]	시 일천	건	폐 율	◦60%이하(고층부 탑상형 : 6층이상 건폐율 40%이하)
		용	적 률	· 용적률:500%이하
		높	<u>0</u>	-
			허용 용도	· 문화 및 집회시설
· 소사3 -종 [종교		용도	권장 용도	· 종교집회시설
	·원미구 심 곡동 489 범기 이의	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외 용도
 부지]	번지 일원		폐 율	∘ 50%) ক
			적 률	· 용적률:250%이하
		넆	(ه	

□ 관련근거

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내지 4항 및동법시행령 제10조,제11조

3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	답	변	
○ 1, 2구역은 용적률 역은 250%로 하는 는 주민의견인데 이	것은 부적합하다	인구밀	도계획에	아파트건립 근거하여 하는 사항	용적률을
○ 3구역의 용적률이	낮음.	○ 최고 2 있음.	295%까지 :	가능하도록	완화되어
○ 공공용지 제공과 관 주어야 된다고 보			경에 방해되	난지에 높은 요인으로 거	
○ 1, 2구역 재개발과 병행 개발되어야 히		○ 교통영	영향평가시	포함시킬	것임.
○ 2구역에서는 역세국 떨어져 위치하여 주체 시에서 매입하는 방	사장, 공원, 광장은	적 불기		립과 관련전 에서 매입/	
○ 도정법에 근거하여 승인후 2년이내에 / 않으면 시장이 강제	사업을 시행하지	○ 강제	시행사항 <u>·</u>	으로 볼수	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- 5. 심사결과
 - 찬성의견 채택
- 6. 소수의견의 요지
 - 없 음
- 7. 기타필요한 사항
 - 없 음
- 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(지구단위 계획)에 대한 의견서

			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연월일	제11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(2005. 3. 24)

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지구단위 계획)에 대한 의견

본 의견안은 소사 역세권에 위치한 저층의 노후 •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확보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소사동 42번지 일원 【소사1구역】15,724.4㎡ (4,756평), 소사본2동 66번지 일원 【소사2구역】7,203.3㎡(2,179평), 소사동 48-21번지 및 심곡동 490-62번지 일원 【소사3구역】80,950㎡ (24,487평)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함.

- 1. 소사역세권 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소명 지하차도에 대한 도로 구조개선이 필요하며, 향후 교통영향 평가 결과 내용을 준수해야 함.
- 2. 소사3구역에 편입된 소사성당은 역사적 · 문화적 · 종교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므로 성당 본당이 존치되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요계획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- 3. 소사1구역에 계획된 주차장 및 광장은 교통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로 조정하여야 함.
- 4. 소사2구역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대부분이 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바 재검토하기 바라며, 협소한 면적에 공공용지 비율이 높아 사업구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, 위치상 소사역 남부에 가깝게 있어 계획된 광장 및 주차장 시설용지는 가급적 시에서 매입하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
2005. 3. 24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소사역세권 도시화경정비구역 지정(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의견안

의안	제358호		
번호	세998도		
의결	2005.3.24		
년월일	(제118회)		

제출연월일 : 2005. 3. 10. 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소사역세권에 위치한 이 지역은 저층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역세권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, 장래 소사-원시가 복선전철 환승역의 역세권으로서 도심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 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 임.
- 본 지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확보, 주거환경개선,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.
-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[소사1구역] 15,724.4㎡(4,756평), 소사구 소사본 2동 66번지 일원[소사2구역] 7,203.3㎡(2,179평), 원미구 소사동 48-21번지 및 심곡동 490-62번지 일원[소사3구역] 80,950㎡(24,487평)에 대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 임.
- 주 용도는 도심기능 수행을 위한 상업, 업무, 문화 시설 및 주거시설의 복합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공원, 광장, 주차장, 도로 및 녹지, 공공공지 등의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.

1.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 분	정비사업의 구분	구역의명칭	위 치	면적(m²)	비고
	신규 도시환경 정비사업	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		103,877.7	
۸۱ユ		-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	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대	15,724.4	
선개 		- 소사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	소사구 소사본2동 66번지 일대	7,203.3	
		-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	원미구 소사동 48-21번지 일대 원미구 심곡동 490-62번지 일대	80,950.0	

2. 토지이용계획(기반시설계획)

구	분	명 칭	면 적(m²)	비 율(%)	비고
		합 계	103,877.7	100.0	
두시:	<u></u> 관리계획	일반상업지역	6,460.0	6.2	
	E지역	준주거지역	34,677.7	33.4	제3종일반주거지역 →준주거지역
		제3종일반주거지역	62,740.0	60.4	
		합 계	103,877.7	100.0	
		소 계	77,540.0	74.6	
	획지	주상복합	23,073.0	22.2	
21		공동주택	40,835.0	39.2	
사	계획	판매·업무·문화용지	9,832.0	9.5	
업		종교용지	3,800.0	3.7	
계		소 계	26,337.7	25.4	
획		도 로	18,371.7	17.7	
7	정비기반	광 장	1,000.0	1.0	도시계획시설
	시설계획	주 차 장	1,120.0	1.1	그/기계럭/기글
		광장 및 주차장	1,638.0	1.6	
		공원 및 주차장	4,208.0	4.0	

3. 구역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

구 분	면 적(m²)	1구역	2구역	3구역	비고
구역 면적	103,877.7	15,724.4	7,203.3	80,950.0	
정비기반시설면적	26,337.7	4,474.4	2,380.3	19,483.0	
도 로	18,371.7	2,354.4	742.3	15,275.0	
광 장	1,000.0	1,000.0	-	_	
주 차 장	1,120.0	1,120.0	-	_	
광장 및 주차장	1,638.0	_	1,638.0	_	
공원 및 주차장	4,208.0	_	_	4,208.0	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・건폐율・용적률・높이에 대한 계획

가. 소사1구역

획지및용도	위	치	Ŧ	· 분	계 획 내 용
				허용 용도	◦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· 소사1 [주상복합	• 원미구	· 소사	용도	권장 용도	판매 및 영업시설, 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(아파트),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
용지]	동 42,	소기 43번		불허 용도	· 준주거지역 불허용도
	지 일원		건	폐 율	∘60%이하(고층부 탑상형 : 6층이상 건폐율 40%이하)
			용 적 률		· 용적률 : 500%이하
			높	0]	-

나. 소사2구역

획지및용도	위 치	ī	1 분	계 획 내 용
· 소사2 [주상복합 용지]			허용 용도	◦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		용도	권장 용도	◦판매 및 영업시설, 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(아파트)
	・소사구 소사본동 66번지	'	불허 용도	· 준주거지역 불허용도
	일원	.	폐 율	∘60%이하(고층부 탑상형 : 6층이상 건폐율 40%이하)
		용	· 적 률	· 용적률 : 500%이하
		높	- 0]	_

다. 소사3구역

획지및용도	위 치	구 분		계 획 내 용
	· 원미구 심 곡동 489 번지 일원	여 나	허용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·소사 3-1			권장 용도	-
6 1 [주상복 합]			불허 용도	∘ 일반상업지역 불허용도 ∘ 미관지구내 불허용도(소사역세 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「민간부문 시행지침」제 10조 및 제11조 참조)
		건 폐 율		∘ 70%이하(고층부 탑상형 : 6층이상 건폐율 40%이하)
		용 적 률		· 용적률:500%이하

		높	٥]	∘ 20층 이하
·소사 3-2 [공동	· 원미구 소 사동 46, 86번지 및 심 곡		허용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		용 도	권장 용도	·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			불허 용도	· 일반주거지역 불허용도
[6 8 주택]	ㅁ ㄱ ° 490번지 일원	건 폐 율		· 50%이하(탑상형 : 40%이하)
1 1 1	<u></u> 원전	용적률		· 기준용적률 : 250%이하 · 완화용적률 : 295%이하
		높 이		-
, ,1			허용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·소사 3-3	ماريات)	용도	권장 용도	·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[공동 주택]	· 원미구 소 사동 49, 74번지 일 원		불허 용도	· 일반주거지역 불허용도
		건 폐 율		∘ 50%이하(탑상형 : 40%이하)
		용 적 률		기준용적률: 250%이하완화용적률: 390%이하
			0]	_
	• 원미구 소 사동 44번 지 일원	용도	허용 용도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·소사 3-4 [판매. 문화			권장 용도	◦판매 및 영업시설, 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(아파트),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
			불허 용도	· 준주거지역 불허용도
.업무]		건 폐 율		◦60%이하(고층부 탑상형 : 6층이상 건폐율 40%이하)
		용적률		· 용적률 : 500%이하
		높 이		-
	• 원미구 심 곡동 489 번지 일원	용도	허용 용도	· 문화 및 집회시설
・소사 3-종 [종교 부지]			권장 용도	o 종교집회시설
			불허 용도	· 허용용도 외 용도
		건 폐 율		∘ 50%০] ঠ}
		용 적 률		· 용적률:250%이하
		높 이		-
	-			

□ 관련근거

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내지 4항 및동법시행령 제10조,제11조

□ 참고사항

○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결과

◈ 협의기간 : 2005. 2. 3 ~ 3. 5

◈ 협의의견

이거케츠키	이 게 이 기	고 드 기 Á	nl –
의견제출자	의 견 요 지	검 토 사 항	비고
도 시 과	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며 부합치 않는 사항은 변경한 후 시행 철로변 공동주택 소음저감대책 강화 3구역 판매업무시설과 공동주택용지사이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이격거리 확보 2구역내 환승주차장 리프트 방식재검토 	-변경사항 변결절차 동 시 이행중 -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- 건축한계선 및 공공 공지로 충분 함 - 교통영향 평가결과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예정	
건 축 과	■ 공원및주차장 위치를 역시방향으로 이동 배치 ■1, 3구역 철도변 계획선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공공용지 설치 및 방음식재 둔덕 설치 ■ 인근지역과의 조회를 위하여 향후세 부계획수립시 층수조정	-반영불가 -철도변 15m도로와 3m후 퇴 건축선 설정으로 충분 하며 방음식재 불합리 -사업시행계획시 협의	
교통행정과	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임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	- 교통영향평가 추진중 - 사업시행시 협의	
녹지공원 관리사업소	• 도시계획시설(공원,광장)은 원인자가 조성후 기부체납 하도록 조건부여	• 사업시행시 조건부여	
소사구청 건축과	■ 2구역 주간선도로 변 건축한계선 3m 이상 확보 ■ 구역범위를 소시구청까지 준공업지역 까지 포함 지정검토	• 일부구간 반영검토 • 구역범위확장은 수용 불가(장기추진과제로 검토)	
(주)삼 천 리	■ 정비구역내 정압기설치 부지(40m)를 사업계획에 반영 결정	- 사업시행계획에 반영	
부천교육청	초등학교는 기존 원미초, 부원초에 수용중학교는 '08년 개교 예정인 인근 "사래중학교"에서 학생수용 가능		
경기도 교육청	 부천시와 합의한 여월정수장 및 GB내 고등학교부지 확보 협의사항 이행 본 사업구역은 세대수 감소로 기존학교 이용가능하니 적의처리 	- 계획된 세대수 감소로 학교부지 확보 불필요	
한국철도 시설공단	 소사3구역 방향에도 출입구 설치에 필요한 시설계획을 반영 	- 철도공단 환승역 계획에 따라협의 후사업시행시 반영	

○ 주민의견청취 결과

◈ 공람기간 : 2005. 2. 22 ~ 3.11(국,공휴일 제외 14일이상)

◈ 공람방법 : 지방신문, 시보 및 홈페이지게재, 게시판게시, 개별통보

◈ 제출의견 : 별 첨

○ 결정권자 : 경기도지사

○ 붙 임:사업계획도면(정비 지침도) 1부.

